

제2711호
2020. 2. 19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
편집인: 홍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
전화: 3396-4955
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

선	기관의장
람	

구 보

● 자치법규

[규 칙]

제716호 :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
 제717호 : 서울특별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9
 제718호 : 서울특별시 중구 구보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12

● 고 시

제2020-15호 :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15
 제2020-16호 :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16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
 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	



자 치 법 규

[규 칙]

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2월 19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(인)

◎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16호

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센터의 조직 구성 등) ①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8조 제4항에 따라 중구 자원봉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에 두는 요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.

② 센터의 조직구성은 센터장, 팀장, 직원으로 하되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③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센터에 요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 배치하여야 하며,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요원으로 인정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요원의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, 센터장 등 요원의 재임기간은 센터의 위탁기간으로 한다.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구(이하 “중구”라 한다)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자원봉사관련 담당 과장 및 자원봉사센터장
2.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 최근 2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봉사자로, 자원봉사활동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
3. 자원봉사단체 대표
4. 사회복지시설 등 수요처 대표
5. 사회복지 관련학과 교수
6. 관내 각급 학교장
7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위원회 위원 중 중구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된다.

제4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센터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·육성에 관한 사항
3. 센터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안건 등

제5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위원의 해임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.

1.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
2.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
제8조(운영 위탁)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.

- 1.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
- 2.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재정적인 부담 능력
- 3.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

③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, 위탁기간
- 2. 수탁사무 및 그 내용
- 3. 위탁운영 조건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
- 4. 협약 위반시 책임 등

제9조(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)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- 1.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한다.
- 2.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봉사관련 소관 국장이 된다.
- 3. 위원은 중구의회 의원 1명, 자원봉사 관련 교수 1명,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3명, 자원봉사관련 소관 과장이 된다.

제10조(수탁자 자격기준) ① 센터 운영 수탁 희망자(이하 "수탁 희망자"라 한다)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신청서와 해당 부서장이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수탁희망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.

- 1. 특정 종교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
- 2. 서울특별시 및 주무관청에 정식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등록을 마치고 주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
- 3.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부담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
- 4.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

제11조(재위탁) ①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4개월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재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서 1부

- 2.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1부
- 3. 해당연도 주요 사업계획 1부
- 4. 센터 직원 인적사항 및 증빙서류 1부
- 5. 단체 구성원 명단 1부
- 6.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 등록증 사본 1부
- 7. 서약서 1부

② 구청장은 재위탁신청서가 접수되면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여부를 결정·통보 하여야 한다.

제12조(위탁의 취소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수탁자에 대하여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- 1. 센터의 운영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및 자원봉사수요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경우
- 2. 사업추진실적 및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·제출하는 경우
- 3. 제8조제3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상의 위탁운영 조건 및 수탁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

제13조(지도·감독)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운영현황 전반에 대하여 필요시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지도·감독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4조(재정 등) ① 센터의 회계처리는 공공회계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여 처리한다.

② 센터장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5조(경비지원)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.
- ③ 구청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6조(인정감 부여) 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활성화와 소속감 및 사명감 제고를 위하여 자원봉사 수첩 및 통장을 발급하며, 활동복 및 배지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대회 및 평가회 등을 개최하여 격려할 수 있다.

제17조(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등 발급)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등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발급을 원하는 사람에게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발급하여 교부할 수 있다.

제18조(운영세칙)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서울특별시중구 자원봉사센터직원 자격기준(제2조 관련)

구 분	자 격 기 준
공 통	「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
센 터 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○ 자원봉사단체·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·시설·학교·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○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
팀 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원봉사분야 근무자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○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으로서 자원봉사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○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직 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원봉사분야 근무자로서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○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자원봉사 관련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○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[별표 2]

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(제15조 관련)

지 급 대 상	지 급 기 준
구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봉사시간 : 1일 4시간 이상 · 교통비 : 5,000원 이내 · 급식비 :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른 공무원 급식단가 이내 · 활동용품
급식이나 차량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	

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개정이유

○『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』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운영위원회 구성(안 제3조)

- 운영위원에 “자원봉사센터장”, “사회복지관련학과 교수”, “관내 각급 학교장” 포함(신설)
- 운영위원 연임 제한(2회) 규정 신설

나.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 정비

- 자원봉사 칭호 부여 관련 규정 삭제
- 자원봉사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관련 규정 삭제
-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 기준 현실화 (별표2)

서울특별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2월 19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(인)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17호

**서울특별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
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**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4조제5항 및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및

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사항 등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서울특별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(이하 “본부장”이라 한다)이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.

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(이하 “재해영향평가 등”이라 한다) 협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
2.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
3.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
4. 「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

제4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위원회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성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 등(이하 “해당 안건”이라 한다)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 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-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, 자문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 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-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예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제8조(위원의 지명 철회 및 위촉해제)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- 1.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- 3. 직무 태만, 품위 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- 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9조(현지조사)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 요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, 사업 시행자, 사업승인기관,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의 의무)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,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 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·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1조(수당 등)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

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개정이유

○ 「자연재해대책법」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 처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목적(제1조)
- 위원회의 구성(제2조)
- 위원회의 기능(제3조)
- 위원회의 회의(제6조)

서울특별시 중구 구보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2월 19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(인)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18호

서울특별시 중구 구보발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중구 구보발행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중구 구보 발행 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보의 편찬·발간·보급 그 밖의 구보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편집과 게재순서 등) ① 구보는 자치법규란, 고시란, 공고란, 구의회란,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자치법규란

- 가. 서울특별시 중구(이하“구”라 한다)의 조례·규칙·훈령·예규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나. 구 조례·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

2. 고시 또는 공고란에는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(이하“법규”라 한다)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

3. 구의회란에는 구의회 소관사항 중 구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

4. 기타란

- 가.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
- 나.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
- 다. 이전에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
- 라.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

③ 제2항에 따른 각 란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되, 조례 또는 규칙의 공포사항은 공포번호 순서대로 게재하며, 그 이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라 게재의뢰서의 접수순으로 한다.

제3조(게재의뢰)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자치법규총괄부서의 장이,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업무 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.

제4조(게재조정)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3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5조(구보의 발행) ① 구보는 매주 수요일에 발행하며,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. 다만,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.

② 구보는 발행일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경우에는

(그2), (그3)··· 호로 발행한다.

③ 구보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전자구보로 발행하며,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함으로써 배포한 것으로 본다.

④ 공보행정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종이구보를 인쇄하여 비치·보관하여야 한다.

제6조(구보의 효력)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. 이 경우 구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개정이유

○「서울특별시 중구 구보발행 규칙」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성 있는 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규칙 전부 개정을 추진하 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「서울특별시 중구 구보발행 규칙」을 「서울특별시 중구 구보 발행 규칙」으로 변경

나. 목적 및 편집과 게재순서 등(제1조~제2조)

- 구보의 순서 열거가 불필요한 조항 삭제
-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(휘보란 ⇒ 기타란)

다. 직위의 현행화(제3조)

라. 구보 발행 관련사항(제4조~제6조)

- 전자구보로 발간하여 구홈페이지에 게시하며, 연1회 인쇄물로 제작
- 구보 발행일 명시조항 신설
- 전자망 게시를 통한 구보 배포의 명문화

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-15호

고 시

도로명주소 부여고시

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2월 19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기준
		도 로 명 고시일	도 로 명 부여기준
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28-1 외 1필	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36-10	2020. 2. 19.	소공로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 4. 22	행정구역 명칭 인용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3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 (www.junggu.seoul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 고시 후 『도로명주소법』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-16호

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2월 19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도로명주소	지번주소	폐지일자	폐지사유
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6길 7	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28-1	2020. 2. 19	건물 철거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3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부여됩니다.